

대학원 학·연·산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4조에 의거 대학원 학·연·산 협동과정(이하 “협동과정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학위과정) 협동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.
- 제3조(학과설치) 협동과정의 학과설치 학과는 협동과정을 위한 협약기관과의 협약서에 명시된 분야와 관련되는 학과로 한다.
- 제4조(입학 및 전형절차) 협동과정의 입학 및 전형절차는 「대학원 학칙」 및 「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다.
- 제5조(교과과정의 운영) ① 교과과정은 대학원이 운영하되 교과과정 중에서 기초 및 전공과목은 원칙적으로 대학원이 담당하고, 특수 분야의 전공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협약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.
②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실습 및 연구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관이 담당한다.
- 제6조(학위논문 및 학위수여) ① 학위논문의 지도는 대학원과 협약기관에서 각 1명씩 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공동지도교수제를 원칙으로 하며, 협약기관의 지도교수는 강의담당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
② 학위청구 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 및 「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- 제7조(운영위원회 설치) ① 협동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·연·산 협동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 부원장이 되고, 위원은 대학원장과 협약기관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를 총장이 위촉한다.
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둘 수 있다.
- 제8조(인력교류) ① 협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협약기관의 연구원을 본 대학교의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, 본 대학교의 교원을 협약기관의 연구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.
② 양 기관으로부터 위촉 또는 임명된 겸임교수, 강사 및 연구원에게는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또는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대학원위원회 보고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과 제반 규정 및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·연·산 협동 학위과정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